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규제특례 심의대상이 될 ‘규제’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의무를 규정함(안 제2조제7호 신설 및 제3조의2제2항).
-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와 내용·방식·형태가 유사·동일한 과제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회신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전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전문위원회 심의로 대체함(안 제8조제10항, 제10조의3제8항 및 제10조의6제7항 신설).
-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을 기획·공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6제1항).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최초 유효기간을 현행 일괄적인 2년 부여에서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특례는 최대 4년까지, 임시허가는 최대 3년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3제10항 및 제10조의6제9항 삭제, 안 제10조의3제11항 및 제10조의6제10항 신설).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여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령 정비 필요성을 판단하고, 법령을 정비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령을 정비(법률의 경우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령을 정비(법률의 경우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의4제6항 신설, 제10조의4제5항 및 제10조의6제13항).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 받은 사업자가 2년 이내에 타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거짓·과장·기만 등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제7항 및 제10조의7제1항).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에게 특례 취소 또는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회수·폐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회수·폐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제9항 신설, 안 제39조제1항제3호).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내용과 부가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제10항 및 제10조의6제16항 신설).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종료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의4제11항 및 제10조의6제17항 신설).

- 정비된 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정비된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허가등의 여부가 결정이 될 때까지 특례사업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0조의5 제8항 및 제10조의6제15항).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게 연구개발, 기술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 규제 법령 정비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에게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고,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신설).

II. 검토의견

- 안 제10조의3제8항 및 제10조의6제7항은 기존에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는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내의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간소화 제도를 도입하면서 각각 같은 항 제2호에서 전문위원회가 규

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안 제10조의4제10항 및 제10조의6제16항은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사정변경 등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에 붙여진 조건 등을 변경·취소할 수 있고, 중대한 사항의 변경·취소시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변경·취소 절차가 절차간소화 제도에 따라 전문위원회가 붙인 조건의 변경·취소에도 적용되며, 중대한 사항의 변경·취소시에는 해당 조건을 부여한 전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안 제10조의4제8항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취소되거나 종료된 경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시허가에 관한 현행 제10조의7에서는 임시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만 해당 신제품·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임시허가가 종료된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 제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판매 중단(현행 제10조의7제2항) 및 과태료 부과(안 제39조제1항제2호)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규제특례의 경우 취소·종료 모두에 회수·폐기명령을 규정(안 제10조의4제9항)하고 있으나 임시허가는 제도 취지상 안전성이 이미 검증된 경우 부여됨을 고려하여 취소된 경우에만 회수·폐기명령을 두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10조의7제3항).

- 그 외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정부조직법」 개

정 사항¹⁾ 반영 등을 위한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 혜 진)

1)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10.1.)에 따라 이 법의 소관 부처 명칭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통상부로 변경됨.